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84
----------	------

발의연월일 : 2024년 9월 일

발의자 : 박선미 의원

1. 제안이유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하남시민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하남시조례 제 호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다. (생략)

②·③ (생략)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다.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